

성년후견제도가 궁금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하십니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후견인 양성과 후견지원 활동을 통해
어르신 ·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제도 안내

- 02/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
- 03/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04/ 성년후견제도 이용절차
- 06/ 성년후견인의 역할
- 07/ 성년후견등기제도
- 08/ 후견계약

조직 안내

- 10/ 성년후견본부의 역할
- 12/ 성년후견본부의 역사
- 13/ 성년후견본부의 조직도
- 14/ 성년후견연수원
- 15/ 후견구조사업



따뜻한 법률복지

사단
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The Korean Support Center for Guardianship System

1 이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85세 고령복 씨

“재산관리·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 치매환자”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고령복 씨. 그동안은 큰아들이 보살펴 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고령복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28세 나도움 씨

“어렵고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

지적장애가 있는 나도움 씨는 자신의 신변처리나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나 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76세 필요녀 씨

“딸이 없는 한 달 동안만 도움을 받고 싶은 어르신”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외동딸과 살고 있는 필요녀 씨는 고령으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최근 외동딸이 한 달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으나, 필요녀 씨를 도와 도우미 관리 등 일상 사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60세 대비남 씨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고 싶은 어르신”

최근 치매판정을 받은 형의 자녀들이 재산분쟁에만 골몰하는 것을 본 대비남 씨. 정신이 온전한 지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자녀들의 분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2 성년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후견인 선임을 통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제도로써,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이용.
- 예 뇌사 상태이거나 자기 자신, 가족의 이름, 주소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혼자서는 일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한정 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
-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에 맞추어 후견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후견”이 가능함.

특정 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
- 일정 기간이나 특정 사무만을 도움 받고 싶을 때.

후견 계약

-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이용.
- 아직 사무처리 능력이 있을 때 장래 후견인이 될 사람을 정해 ‘후견계약’을 맺고, 이후 판단 능력이 부족해져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받음.

법
정
후
견

임
의
후
견

3 성년후견제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성년후견 심판 청구

성년
후견

고령복 씨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

한정
후견

나도움 씨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

특정
후견

필요녀 씨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

후견
계약

대비남 씨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

가정법원

후견인 선임

후견 사무

●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등 검토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다.

● 관계인 진술청취· 당사자 심문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사건 본인을 심문(의사확인)한다.

● 피후견인 정신감정 등

성년후견·한정후견은 정신감정이 원칙, 특정후견은 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 심판 고지

심판결과를 청구인과 후견인에게 발송. 심판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후견등기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후견인의 성명,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공시한다.



성년후견인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지출이 과도하지 않은 행위를 제외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필요한 경우 취소한다.



한정후견인

가정법원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대리하거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특정후견인

일정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를 후원 또는 대리한다.

가정법원



임의후견 감독인



임의후견인 (후견계약을 통해 정해둔 후견인)

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업무 등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4 '후견인'에 대해 궁금하세요?

○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재산관리

- ▶ 부동산의 관리 · 보존 · 처분
- ▶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 물품의 구입 ·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변경 · 종료
-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 ▶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신상보호

- ▶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 ▶ **주거관련 행위** : 주거공간 마련 · 변경 · 처분, 시설 입소 · 퇴소 등
-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 ▶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할, 취업 등
- ▶ 기타 일상생활 지원

○ 후견인의 보수는 누가 얼마나 지급하나요?

후견을 받는 사람이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후견의 경우 법원에서 보수액을 결정하며, 후견계약의 경우 피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견이 필요하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일 때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따뜻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인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1. **법원이 직접 감독** :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업무 수행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후견감독인을 통한 감독** : 법원은 필요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견인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후견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이용하세요!

○ 후견등기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후견 유형별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며,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후견개시 및 종료, 피후견인·후견인·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1. 후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할 때 :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후견을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때(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래 시점인 현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디에서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전국 가정법원 등에서 발급 :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혹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령 상 규정된 사람만 발급 :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밖에 법령에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6 내가 설계하는 나의 노후, 후견계약



대비남 씨

“나의 노후, 미리 미리 대비할래요!”

치매증세가 있는 형의 재산을 둘러싼 조카들의 분쟁에 충격을 받은 대비남 씨는, 자신의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해 두었습니다.

○ 후견계약이란?

장래에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들어두는 일종의 ‘정신’보험’과도 같은 계약입니다.

○ 후견계약의 절차

- 1

후견인 선정

후견인은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치매 등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누구보다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 ↓
- 2

계약 내용 정하기
(인생 및 상속 플랜)

어떤 일을 어떻게 맡길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세금,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선호하는 병원이나 간병인 선택, 입원 등 치료절차는 어떻게 하며, 주거환경과 상속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계약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 ↓
- 3

공증 및 후견등기

후견계약의 내용이 정해졌으면 임의후견인과 후견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공정증서로 체결)하고, 가정(지방)법원에서 후견등기를 합니다.
- ↓
- 4

임의후견감독인 신청 및 선임

계약 체결 이후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또는 후견인이 될 사람, 배우자 등 후견신청 청구권자가 가정(지방)법원에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면 비로소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해 정식으로 후견업무가 시작됩니다.
- ↓
- 5

후견계약의 종료

후견계약을 체결한 후에 후견인이 미덥지 않거나 후견계약을 한 것이 후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에는 후견인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후견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의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7 후견 계약에 추가할 수 있는 계약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후견계약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추가 계약'을 해 두시면 노후뿐 아니라, 사망 후에도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 추가계약의 종류



고독사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기적 면담계약

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후견계약자의 생활상태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살펴드리는 계약입니다. 고독사 등의 문제를 겪지 않고 후견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의 사무를 도와주세요!



임의대리계약

판단능력은 충분하지만 고령·질병 등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힘든 후견계약자를 위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도 후견계약자의 생활환경, 요양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입니다.



장례와 신변정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후사무위임계약

유언서의 내용과 저촉되지 않도록, 내가 죽은 후의 사망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고,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며, 유산 분배는 어떻게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별도의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이럴 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찾으세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2011년 6월, 대한법무사협회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할 때 “맞춤형” 성년후견 상담

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하거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치매증세가 심한 큰아버지가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계신데...
치매증세가 심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요양비가...
팔순 넘은 어머니가 필요도 없는 물건을 자꾸만 사들여요...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년후견 심판 청구가 필요할 때 성년후견 심판청구 절차의 지원

성년후견지원본부는 후견개시심판, 변경, 종료 등 후견심판과 관련된 모든 청구절차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해드립니다.

‘가족후견인’이 되었을 때 가족후견인의 후견업무 지원

성년후견지원본부는 가족이 후견인이 되었을 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피후견인 재산목록 작성’, 후견업무 보고서 작성 등의 후견업무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노후 대비로 미리 ‘후견계약’을 해놓고 싶을 때 후견계약 지원

성년후견지원본부는 후견계약서 작성, 공증, 등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등 후견계약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해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직 후견인'이 필요할 때

전문직 후견인 추천 및 관리 · 감독

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교육과정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추천하는 후견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인입니다.

- **법정후견** : 후견심판 청구 시 가족 중 후견인 후보자가 없을 때, 전문직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 **임의후견** :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01 후견인 양성 및 후견 지원

- 후견인 연수과정 운영 (성년후견연수원)
- 가정(지방)법원에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
- 후견활동 지원 및 관리 · 감독
- 법인 후견활동(법인후견센터 운영)

02 취약계층을 위한 후견구조사업

- 자원봉사 "따뜻한 후견인" 사업
- 각종 후견심판 청구절차 지원
- 성년후견제도 상담

(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하는 일

03 성년후견제도 연구 및 개선

- 후견업무지침 및 각종 매뉴얼 개발
- 후견활동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연구
- 성년후견제도 운용에 관한 모니터링
- 성년후견제도 관련 입법 활동

04 대외 협력 및 홍보

-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사업 수행
- 지방자치단체와 후견 관련 협력사업 수행
-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 후견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성년후견제도 대국민 홍보

9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걸어온 길

2011

- 06월 (사)성년후견지원본부 설립
- 09월 사단법인 설립 허가(법무부)
- 11월 복지TV 성년후견 관련 인터뷰



2012

- 02월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 03월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성년후견 관련법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 11월 법원행정처와 간담회



2013

- 01월 성년후견인 양성 시범교육
- 05월 성년후견연수원 설립
- 06월 제1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
- 07월 각 가정법원에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 법인후견센터 설립
- 10월 『성년후견 법령집』 발간



2014

- 02월 『성년후견심판 절차와 서식』 발간
- 03월 “따뜻한 성년후견인” 되기 운동 실시
- 04월 제1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 05월 제2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
- 06월 성년후견제도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07월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 10월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12월 ‘성년후견제도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지역 노인복지관 직원 대상 성년후견교육 실시



2015

- 02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강사활동가 양성과정 실시
- 성년후견지원본부 뉴스레터 발간
- 06월 서울가정법원과 간담회



11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 양성기관!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믿을 수 있는 전문직 후견인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성년후견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업무는 법률 영역뿐 아니라 피후견인의 재산, 주거, 신상, 복지, 의료, 행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여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후견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충분한 학습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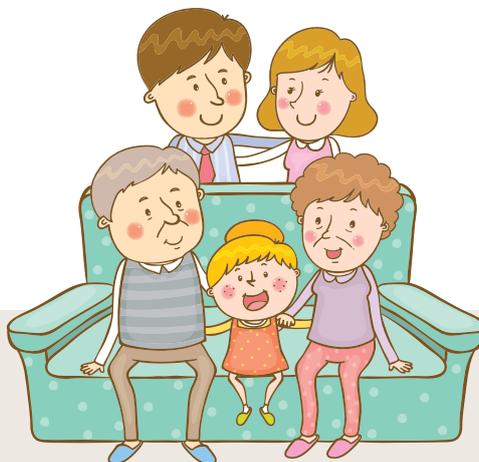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성년후견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 보수교육, 정기교육 등의 과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직 후견인의 양성뿐 아니라, 후견인으로서의 신뢰성과 자질이 지속적으로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교육 내용	교과목수	이수시간
신규 교육	성년후견본부 정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제도 개론 ○ 후견제도 각론 ○ 사회복지제도 및 실습 	16개 과목	40시간 이상
보수 교육	가정(지방)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 등의 권한과 의무 ○ 후견·후견감독 업무 	5개 과목	12시간 이상
정기 교육	성년후견본부 후견인 등 후보자 명부 또는 후견인 등 명부에 등재된 회원 (선임 후 매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후견감독 사례 ○ 후견·후견감독 업무 	4개 과목	8시간 이상

12 ‘따뜻한 후견인’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권리옹호에 취약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자원봉사로 후견인 활동을 하는 “따뜻한 후견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후견이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 이용절차



○ ‘따뜻한 후견인’ 지원 업무

후견 등 지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 재산관리 지원
- 신상보호 지원
- 권리옹호 지원

성년후견 심판절차 지원

- 각종 성년후견 심판절차 지원
- 성년후견 관련 상담

무료 법률상담

- 무료 법률상담
- 권리옹호 지원



www.kscg.net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견 지원과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따뜻한 법률복지'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명	주소	연락처
서울중앙지역본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0길 10-14 (방배동)	02)732-0232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8길 41, 3층 (구의동)	02)456-1795
서울남부지역본부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9길 7-1 (신정동, 법무사회관)	02)2603-1955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0, 703호 (방학동)	02)948-1111
서울서부지역본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 813호 (공덕동, 현대하이엘)	02)701-5447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36, 301호(기능동, 현도빌딩)	031)853-6108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869, 1503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032)420-0322
경기중앙지역본부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7, 법무사회관 4층 (원천동)	031)211-2638~9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금강로 82-2 (운교동 171-3)	033)254-364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중구 보문로 295, 4층(선화동)	042)256-5685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북문로 2가 116-28	043)256-3022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62 5층	053)425-9180
부산지역본부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6-1 (거제동, 법무사회관 7층)	051)506-7551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706번길 4-14 401호	055)287-0026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5-9 (대인동)	062)222-5739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69 (덕진동 1가)	063)255-4962



따뜻한 법률복지

사단
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The Korean Support Center for Guardianship System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9층

Tel. 02) 517-1801 Fax. 02) 548 - 1801